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17
----------	-------

발의연월일 : 2025. 11. 13.

발 의 자 : 전현희 · 김영환 · 김영배
김병주 · 추미애 · 이성운
박상혁 · 진선미 · 서영석
장경태 · 박해철 · 채현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되어 보험급여비용의 환수가 결정된 병원·약국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소이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이르나, 그 환수율은 6.79%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면허대여약국은 일단 개설하고 나면 정상적인 약국과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관리와 감독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최선임.

이에 약국의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가 약국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제5호, 제20조의3 신설 및 제21조의2제2항 후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제20조의3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약국 개설 교육 등) ①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기 전에,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약사(藥事)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2. 약국 경영윤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약국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각각의 지부 또는 분회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약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약사회 분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약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약사회 분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가 없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약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약사회 지부 또는 한약사회 지부에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전달받은 약사회 분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회 지부 또는 한약사회 지부를 말한다)는 그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약국개설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의2제2항 후단 중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0조의3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제5항제5호, 제20조의3 및 제21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⑥ (생략) <u><신설></u>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제20조의3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u> ⑥ (현행과 같음) <u>제20조의3(약국 개설 교육 등) ①</u> <u>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기 전에,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u> 1. <u>약사(藥事)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u> 2. <u>약국 경영윤리에 관한 사항</u>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약국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② 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제20
조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
려는 자와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
계하려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각각의
지부 또는 분회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
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약국의 주소지
를 관할하는 약사회 분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약국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약사회 분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가 없는 경우에는 개설하
려는 약국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약사회 지부 또는 한약사회
지부에 알려야 한다.

<u>제2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① (생략)</u> <u>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거나 <u>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u>③ (생략)</u>	<u>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전달받은 약사회 분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회 지부 또는 한약사회 지부를 말한다)는 그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약국개설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u> <u>제2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① (현행과 같음)</u> <u>② ----- ----- ----- ----- -----. ----- -----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0조의3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u> <u>③ (현행과 같음)</u>
--	---